

(2001누10846호)-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상 고 장

상 고 인(원고)

피상고인(피고)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상고

소 가 : 20,000,100원

인지대 : 190,000원

송달료 : 50,000원

대법원

귀 중

상 고 장

상 고 인(원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위 상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광 운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피상고인(피고) 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상고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1누10846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들은 동원의 2002. 11. 21. 선고한 판결정본을 2002. 12. 6.에 송달받았으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결의 표시)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0. 7.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공개청구 문서목록 제2항 기재의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각 심의회의 참석자 명단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 고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장 부분

1. 소송위임장

각 1통

2002. 12. 18.

위 상고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손 광 훈

대법원

귀 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2두 12946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노 정 하외 10명
피 고 경기도 고양교육청교육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하여 법리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가.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준하는지 여부

- (1) 원심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을 하였습
니다.
- (2) 그러나 위 5호 규정은 문맥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를 전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여부를 판단토록 하고있습니다.
- (3) 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
보가 아니라면 비공개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4) 원심처럼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끼리 위 5호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그리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할 정도의 확대해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5) 원고들은 이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제반 행정처분이 이뤄져 결국 자녀들의 교육권 등을 침해받은 뒤에 비로소 당시의 의사결정과정이 도대체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해당 공직자 등이 제대로 성실하게 일을 하였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 (6) 원심이 인용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나.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1) 원심은 ‘위원회의 위원명단’ ‘심의회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2) 그런데 위 명단등과 이 사건 비공개 부분과는 사실상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명단 부분등을 공개해도 때에 따라서는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3) 즉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들을 공개하더라도 첫째, 개인 식별에 따른 오해나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행정 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 (4) 둘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위원회의 회의록상의 발언자 인적사항등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셋째,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심의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넷째,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7) 결국 이 사건의 비공개 부분도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해석을 그르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2003. 1.

위 원고(상고인)들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손 광 운

대법원 특별3부(사)

귀 중

답 변 서

사 건 : 2002두1209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 노○○외 10명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34번지 장성마을 302동 8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363-1 법전빌딩 304호)

피 고 :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

소송수행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8번지 경기도고양교육청

전화 : 031-900-2890, 전송 031-907-809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 가. 원심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규정과 관련하여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된다 라고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까지 위 5호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그르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할 정도의 확대해석이라고 주장을 하고
- 나. 원심이 ‘위원회의 위원명단’ ‘심의회 의 참석자 명단’은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위원회 회의록중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들을 공개하더라도 개인 식별에 따른 오해나 혼란을 초래한다거나 행정 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공개로 인하여 심의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심사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 가. 심의의원 명단이나 회의참석자들의 명단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항소 및 상고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며 해당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기록이고 위원 개인의 정보인 동시에 사생활 보호에 해당되므로 공개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그중 특히 비공개된 특정 발언의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어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심사를 거쳐 결정된 심의위원회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해할 아주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각종 공공기관의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기록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무도 공개된다면 추후 심의 내용이 공개된 후 이해관련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사생활이 침해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는 심의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할 수 없고 심의위원 본인이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여 심의시 공정성을 크게 해쳐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의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법리해석을 그르치고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합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와 심의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투명성과 공정성, 정당성등을 확보하여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심의내용결과의 공개정보만으로도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심의 개별 사안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발언자가 누구인지까지를 밝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법리를 무한정으로 확대 해석한 주장으로 다분히 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중에서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 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더라도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킬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참석인원 명단과 비공개 부분과는 사실상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아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하지만, 회의록에 기재된 개인별 발언내용이 공개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며 이는 곧 원고가 인정한 것처럼 심의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설사 침해정도가 미미하더라도 심의 절차시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각자

의 소신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 하는등 자유롭고 활발한 내부 토의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의시 오히려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투명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자들에게 미치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요소는 최대한 법적으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절차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심의위원들의 최소한의 합법적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심의 위원들이 위촉 당시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이미 예상할 수 있다고 예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다분히 원고의 주관적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2003. 2. .

경 기 도 고 양 교 육 청

위 피고의 소송수행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인)